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7.10(월) 10:00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전문위원 유지영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6월 26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대상 및 구성형태 구체화,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·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

4. 주요내용

가. 하부협의체의 대상 및 구성형태 구체화(안 제5조제5항)

나.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운영 주체, 사무국 직원 임용 등 사무국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
다. 하부협의체와 사무국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지원 근거 신설(안 제6조의2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대상 및 구성형태를 구체화함은 물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개정안 제2조의2 제2항 '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'라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